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1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 박지원 · 김용민 · 이건태

전용기 • 이성윤 • 문진석

임미애 • 박균택 • 이재정

정진욱 · 장경태 · 이기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두고,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변호사 외 퇴직공직자 등의 수임자료와 활동내역 등을 제출받아 법조 계 전관예우를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그 보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자료제출의무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관련 의무로 명기되어 있는 관계로, 국정감사에서의 자료제출요구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에 규정된 국회보고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외에도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함으로써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9조의9 및 제89조의11).

법률 제 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9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부분 중 "인사청문회 또는"을 "인사청문회,"로, "국정조사를 위하여"를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위하여"로,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제89조의4제3항, 제89조의5제2항 및 제89조의6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9조의6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퇴직공직자의 성명, 취업일, 업무활동내역(고문 또는 자문 내역을 포함한다)이 기재된 최근 3년간의 업무내역서

제9장에 제8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11(자료의 보관)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부터 제89조의6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출받아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 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 <u></u>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 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 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 ----인사청문회,-----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위하 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 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 여-----제 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 89조의4제3항, 제89조의5제2항 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및 제89조의6제4항-----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89조의6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퇴직공직자의 성 명, 취업일, 업무활동내역(고 문 또는 자문 내역을 포함한

	다)이 기재된 최근 3년간의
	<u>업무내역서</u>
<u> <신 설></u>	제89조의11(자료의 보관) 윤리협
	의회는 제89조의4부터 제89조
	의6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
	<u>여야 한다.</u>